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9
----------	------

발의연월일 : 2020. 7. 8.

발 의 자 : 고영인·서동용·권철승
이장섭·윤재갑·전재수
최혜영·인재근·이동주
맹성규·김성주·윤관석
서영석·조오섭·송옥주
황운하·민홍철·권인숙
이규민·홍성국·이용우
임호선·문진석 의원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심의회기구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률에 따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품 출시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

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계속 표시·광고한 자가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표시·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표시·광고”를 “표시·광고(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4조”를 각각 “제9조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

4. ~ 6. (생략)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
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
다.

1. 2. (생략)
3.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

4. ~ 6. (생략)
- ④·⑤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
을 위반하거나 제14조-----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
을 위반하거나 제14조-----

4. ~ 6.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